

새로 개정된

농, 어업 재해대책법의 내용은 ?

농 립 수 산 부

개정내용

- 농어업 재해범위를 확대
 - 설해 · 동해 · 이상조류(異常潮流) · 적조현상(赤潮現象)을 농어업 재해로 추가
- 풍수해대책법에서 지원이 제외된 농어업재해에도 지원
 - 서리 · 우박 · 냉해 및 동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
 - 이상조류 · 적조현상에 의한 수산양식물 피해
 - 시설물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

왜 개정했나?

- 지금까지 서리 · 우박 · 냉해 · 적조현상피해 시 지원근거없었음
- 최근, 기상이변에 따라 자주발생되고 있는 서리 · 우박 · 냉해 및 동해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이상조류 · 적조현상 등에 의한 수산양식물의 피해에 대하여는 법적 지원근거가 없었음.
 - 풍수해대책법에는 풍수해에 의한 시설물 피해복구 중심으로 지원
 - 농업재해대책법에는 가뭄대책지원에 한정되어 있었음.
- 이들 법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재해가 발생될 때에는 정부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지원해 왔으나 미흡한 경우도 없지 않았음.
- 모든 농어업 재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
 -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구와 지원을 하게 되어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다음해 농사와 수산양식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 한 것임.

보조 및 지원 방법과 내용은

- 재해의 피해정도와 영농 · 영어 규모에 따라
 - 농약대, 대과대(종묘대+비료대), 치어대 보조
 - 중 · 고등 학생자녀 학자금 면제, 영농 · 영어자금 회수연기 및 그 이자 감면
 - 생계가 어려운 농어가에 대하여는 이재민 구호와 생계비 보조
 - 수산양식물의 경우, 죽은 양식물 철거에 따른 철거비 지원
 - 90.1.1이후 발생한 서리 및 우박피해도 이 법에 따라 소급 지원
- 다른 법령에서 지원되거나 일반 병충해는 지원되지 않음
- 풍수해대책법, 담배 · 인삼사업법 등에 의하여 지원되거나 침관수 또는 우박 등의 재해가 아닌 일반 병충해는 지원에서 제외됨.